

1. 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 규칙에 반영하고,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명시 및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살아있는 기증자의 사후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
- 나. 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출하는 서류를 진료비 계산서 등에서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함
- 다. 가족이 없는 뇌사자 등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 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에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뇌사판정 기관의 장도 장기등기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현재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고, 장제비·진료비, 사전검진 진료비, 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은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같은조제4항으로 하고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같은조제5항으로 하고 제1호의 “이식받은 사람이”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가목의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뇌사판정기관 지정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장기등의 기증자 등록 안내사항 : 1. 기증희망자 등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1호의 본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을 추가한다.

별지 제23호 내지 제25호서식에 “처리기간 30일”과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추가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처리기간 90일”을 “처리기간 30일”로 하고, “1.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u>기록의 작성 및 제출</u>) ① ~ ② (생 략) <u>< 신 설 ></u>	제24조(<u>기록의 제출 기간·방법 및 절차</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u> <u>른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u> <u>람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u> <u>사후경과에 관한 기록은 그 내용</u> <u>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u> <u>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u> <u>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u> <u>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u> <u>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u> <u>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u> <u>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u> <u>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④ ----- -- <u>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u> <u>람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u> <u>사후 경과에</u> ----- -----.
④ <u>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u> <u>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u> <u>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 1. <u>이식받은 사람이</u> 진료를 받	⑤ ----- ----- -----.
	1. <u>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u>

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생 략) 3. (생 략)	<u>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이</u>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생 략) 가. <u>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u> <u>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u> <u>수 있는 서류</u> 나. ~ 다. (생 략)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u>입·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u> <u>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 기</u> <u>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나. ~ 다. (현행과 같음)